

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6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2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-5번지에 건립중인 충청북도장애인체육관이 '98. 12월 준공 예정에 있어
- 장애인체육관(장애인이용시설)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, 기 제정되어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장애인복지법 제37조,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통합 운영키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제명 변경
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→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
- 시설명칭 변경
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→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
- 제2조(위치)를 복지시설별로 지정
복지관은 청주시 호암동 산55-24번지에, 체육관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-5번지에 둔다

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” 를 “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(이하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체육관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-5번지에 둔다

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 제1항·제2항·제3항, 제9조 제2항·제5항, 제11조 제2항, 제12조 중 “복지관”을 “복지시설”로 한다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